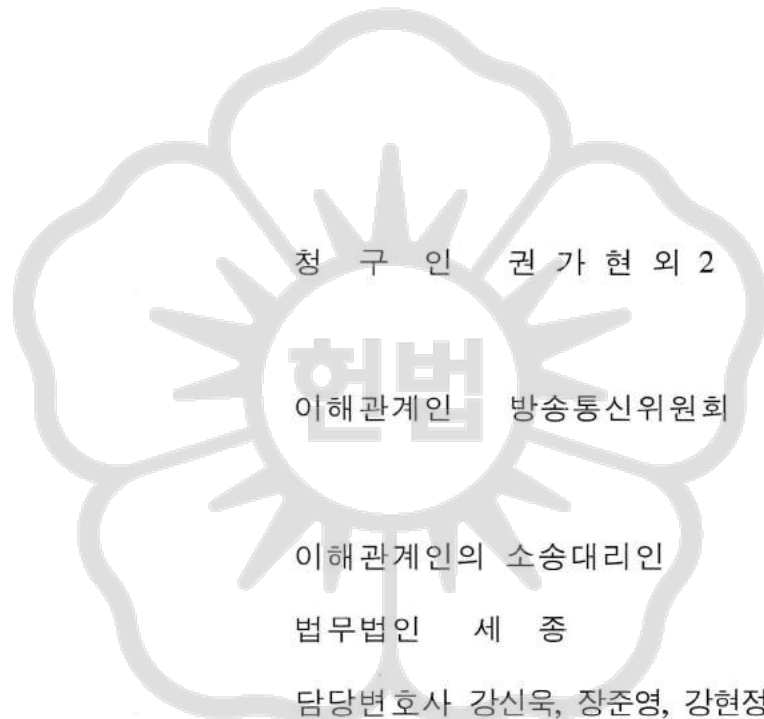


법원용

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 의견서



청구인 권가현 외 2

헌법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이해관계인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신욱, 장준영, 강현정,

이민영, 강지현

헌법재판소 귀중

전화(직통) : 316-4059(변호사 강신욱),316-4410 (변호사 장준영),316-4080 (변호사 강현정)  
316-1783 (변호사 이민영),316-1518 (변호사 강지현)

e-mail : myolee@shinkim.com (변호사 이민영)

팩시밀리 : 316-0357



법무법인 세종  
SHIN&KIM

## 의견서

사 건 2016헌마738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가현 외 2  
이해관계인 방송통신위원회

위 사건에 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다 음

헌법

### 1. 들어가며

본 의견서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이해관계인의 의견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청구인의 2019. 6. 7.자 의견서에 개진된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 2.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의무화한 차단에 한정된 검토의 필요성

가. 사업자 자율로 제공하는 부가적인 기능을 근거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 의무 조항의 위헌성이 판단되어서는 안됩니다.

청구인은 청소년 유해물 차단 앱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 즉 스마트폰 사용 실

- 1 -

법무법인 세종  
SHIN&KIM

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카톡 차단 등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 및 이 사건 시행령 조항(통칭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합니다)이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기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문제삼고 있는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시간 제한, 위치 추적 등 대부분의 기능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의해 강제되는 차단이 아니라, 소비자(청소년을 둔 부모)의 수요에 따라 사업자들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앱으로, 소비자들이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한 기능들입니다.

이동통신사업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차단수단은 청소년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기능만을 제공하며, 청소년의 설치앱 현황 확인, 인터넷사이트 접속내역 확인, 위치정보 추적 등의 기능이 제공되는 앱은 청소년 또는 법정대리인이 원할 경우 선택적으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청구인이 예시로 들고 있는 구글 패밀리링크, 모바일펜스 등은 Google LLC, (주)모바일펜스 등 통신판매업자가 제공하는 기능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의 규율을 받는 ‘전과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아닙니다.

<통신사별 차단 앱 제공현황>

구분	어플명(이동사)	주요기능	유/무료	OS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	T청소년유해차단(SKT) kt자녀폰안심프리(KT) 자녀폰지킴이(LGU+) 엑스키퍼 가드(알뜰폰)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무료	안드로이드
이동통신사업자	T청소년안심팩(SKT)	•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		



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용 통계/모니터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앱 목록, 앱 종류별(게임, 소셜, 검색, 기타) 사용 시간</li> </ul> </li> <li>• 보행 중 사용, 휴대폰 결제 등 차단</li> <li>• 앱 이용시간 설정</li> <li>• 학교폭력 징후 감지(문자, 검색단어 등)</li> <li>• 위치정보 추적</li> </ul>		
	쿠키즈(SKT)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모용 통계/모니터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앱 목록, 앱 종류별(게임, 소셜, 검색, 기타) 사용 시간</li> </ul> </li> <li>• 자녀 위치 조회(실시간 위치 확인, 안심존 설정 등)</li> <li>• 미션/일정 등 스케줄 관리</li> </ul>		
	kt자녀폰안심(KT) U+자녀폰지킴이(LG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 앱/인터넷사이트 차단</li> <li>• 앱 사용시간 설정</li> <li>• 부모용 통계/모니터링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터넷 사이트 접속 내역</li> <li>- 설치앱 목록, 앱 종류별(게임, 소셜, 검색, 기타) 사용 시간</li> </ul> </li> </ul>	유료 (2,200원)	
	사이버가디언(MOIB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해 인터넷사이트 차단</li> </ul>	무료	아이폰

\* MOIBA(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는 모바일 산업 활성화 및 건전한 생태계 목적으로 이동통신사, 단말사, 서비스 사업자 및 주요 협회 등이 참여하여 설립한 단체

이동통신사업자는 청소년과 계약 시 네트워크 유해차단, 앱차단 등의 부가서비스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고 차단앱을 설치하면 네트워크 기반 환경, 와이파이 기반 환경에서 유해 웹사이트 차단 및 유해 앱 설치차단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요구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 외의 청소년의 설치앱 현황 확인, 인터넷사이트 접속내역 확인, 위치정보 추적 등 나머지 서비스는 사업자 자율로 별도의 신청을 받아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의 부가서비스 가입신청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서비스(KT자녀폰안심, U+자녀폰지킴이, T청소년안심팩)의 경우 별도로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 T청소년안심팩은 법정대리인에게 가입 시 별도안내 후 추가적으로 부가서비스 신청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공하는 추가적인 부가서비스(유료/무료)에 해당하며,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혹은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통신판매업자 등이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무관합니다. 그럼에도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의무화한 차단기능과 차단앱이 부수적으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를 혼동·혼용한 상태에서 위헌주장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법적으로 정하여진 의무는 이동통신사업자가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것과 차단수단의 작동여부만을 통지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어떠한 앱이 설치되어있는지, 어떠한 앱을 주로 사용하는지, 청소년의 현재 위치가 어디인지 등의 정보가 법정대리인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기능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을 논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여부를 문제삼으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의무화하고 있지 않은 서비스 기능을 근거로 삼고 있는 부분은 모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나. 차단앱의 보안 문제는 모든 앱에 공통된 문제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유해물 차단 앱의 보안 위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앱 보안 위험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문제점이 아니라 스마트폰 앱이 일반적으로 지니고 있는 문제점에 불과합니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 차단수단 제공을 의무화하였기 때문에 청소년들이 개인정보 유출 및 해킹 등 보안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차단 앱의 보안문제는 앱의 사용과정에서 사후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sup>1)</sup>,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sup>2)</sup> 등 보안 위험을 방지하고 해킹이나 개인정보 유출 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를 통해 규율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은 차단수단 제공의무는 앱 설치의 사전적 단계에서 작동하는 것이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보안 위험에 노출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여부와 차단앱의 보안

1) 제28조(개인정보의 보호조치)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개인정보를 취급할 때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취급하기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 통제장치의 설치·운영
3.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4.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5. 백신 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에 의한 침해 방지조치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보호조치

2) 제48조(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대량의 신호 또는 데이터를 보내거나 부정한 명령을 처리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에 장애가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문제는 무관합니다.

특히, 청구인은 '사이버안심존'의 보안문제를 지적하고 있으나, '사이버안심존'은 학교와 가정에서 사용하는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예방 프로그램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제공되는 앱이 아니라 이용을 원하는 자가 앱스토어에서 검색 및 설치를 통해 가입할 수 있는 앱에 해당합니다. 특히, '사이버안심존'은 정보통신망법 제3조, 제4조 제7호, 제41조에 근거한 청소년보호시책의 일환으로 개발된 앱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무관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청소년에게 제공하는 차단수단은 T청소년유해차단(SKT), kt자녀폰안심프리(KT), 자녀폰지킴이(LGU+), 엑스키퍼 가드(알뜰폰)로,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무관한 앱, 더 나아가 해당 앱의 보안문제를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 근거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3. 기본권 제한에 대한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 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한 여부

(1) 청구인은 유해정보사이트에 접속할 때만 차단수단 서버로 정보가 가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이 접속하는 모든 웹사이트의 정보가 차단수단 서버에 전달되어야 전달된 정보 중 차단수단 서버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유해정보 사이트와 일치하는 웹사이트 정보가 있는지 확인 가능하므로 당연히 해당 정보를 직접 보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차단을 위해 필요한 정보의 범위를 오해한 데서 비롯된 잘못된 주장입니다. 차단 앱은 인터넷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을 차단하기 위해 이용자가 주고받는 정보의 본 내용까지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연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IP주소, URL, 포트번호 등)만을 활용하고, 실질적인 콘텐츠의 내용까지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즉, 이러한 차단방식이 활용하는 정보는 인터넷 서비스 연결을 위해 필요한 정보에 국한되며 이러한 정보의 열람마저 사생활의 침해라고 간주한다면 모두 통신서비스의 제공 자체가 사생활의 침해라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 사건 차단방식은 이용자가 접근하고자 하는 실제 콘텐츠나 데이터를 담고 있는 정보는 수집하지 않으며 자동적, 기계적 방식으로 차단이 이루어지므로 청구인의 주장처럼 해당 정보를 직접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2) 또한 청구인은 청소년의 스마트폰에 차단앱이 설치되었는지 여부,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도 청소년의 정신적인 내면생활의 영역으로서 사생활 비밀에 속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단앱 설치 여부를 확인하거나 법정대리인에게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통지하는 것은 청소년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소년이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차단앱과 같은 차단수단이 제공되어야 하는바,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모든 청소년이 차단앱 설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그 설치 여부 자체가 청소년 본인의 내밀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규정에 따라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부모에게 통지하는 것은 부모에게 청소년에게 유해사이

트로부터 자녀를 보호하고, 올바른 스마트폰 사용습관을 기를 수 있도록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이 규정하는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 통지는 차단앱이 구동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로 차단이 이루어진 개별 사안에 대하여 통지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구나 설치앱 및 앱 사용내역에 대한 기록을 제공하는 것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의무화하고 있는 차단기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3) 특히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제한한다는 근거로 한선교의원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의 지적사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청구서 제13면, 청구인 제출 첨부서류 2 참조). 그러나 검토보고서 대상이 되었던 개정안의 문언을 살펴보면, “차단수단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차단수단이 재설치될 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거나, “차단수단의 정상적인 작동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을 일시제한할 수 있다”는 등 실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위 검토보고서의 지적사항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전혀 무관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마치 해당 검토보고서의 지적사항이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한 지적사항인 것처럼 왜곡하여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 나.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 여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19종에 달하는 차단 앱 중 일부는 자녀가 누구랑 연락하는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등 구체적인 사용 내역까지 수집하여 이를 부모에게 알려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이 기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위와 같은 기능을 담고 있는 유료 차단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해당 기능이 제공되지 않은 무료서비스가 수집하는 정보에 대해서만 언급함으로써, 차단앱으로 인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가 없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차단앱이 유료, 무료로 제공되는 것은 기능이 그만큼 다르기 때문이며 이해관계인이 기 제출한 의견서 상에 무료 차단앱에 대하여만 언급한 것은 청구인이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지적하는 위와 같은 유료앱의 일부 기능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포함된 기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의무로 정하고 있는 차단기능, 즉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을 위해서는 자녀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등의 사용내역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앱에서는 자녀가 누구와 연락하는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등 사용내역은 전혀 수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유료 차단앱에서 제공되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선택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그러한 부가적인 유료서비스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 필요한 경우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받고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유료 차단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은 개인정보 보호법제로 보호하는 영역이고 이 사건 차단수단 설치의무와는 무관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동의 하에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취지에 부합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 다. 청소년의 알권리 제한 여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음란정보에 대한 차단수단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이나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로 지정되는바(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3호3), 이러한 고시를 통해 어떠한 정보가 차단되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4).

3)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청소년유해매체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결정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나.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1조에 따라 각 심의기관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심의하거나 확인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고시한 매체물

4) 참고자료 6-1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9-23호



[그림 4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목록표 (애플리케이션 부문 발췌)]

매체분류	순서	일련번호	고시호수	정보위치
애플리케이션	1	2012-5741	제 2012-33호	구글 플레이 내 '[올라보는만화] 고마운만화'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2	2012-5742	제 2012-33호	구글 플레이 내 '애무의정석 200+'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3	2012-5743	제 2012-33호	애플 앱스토어 내 '애무의정석 Free'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4	2012-5744	제 2012-33호	구글 플레이 내 '오르가즘의 달인 오선생 Free'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5	2012-5745	제 2012-33호	애플 앱스토어 내 'Dr.X의 은밀한 남자이야기 - Ad Version' 애플
애플리케이션	6	2012-5746	제 2012-33호	애플 앱스토어 내 '마한레벨테스트-(男)'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7	2012-5747	제 2012-33호	애플 앱스토어 내 '마한레벨테스트-(女)'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8	2012-5748	제 2012-33호	구글 플레이 내 '룸싸롱, 풀싸롱 정보 접대의달인'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9	2012-5749	제 2012-33호	구글 플레이 내 '술집찾기 야고앱(YAGO APP)'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10	2012-9232	제 2012-41호	애플 앱스토어 내 '오르가즘마스터 Free'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11	2012-9233	제 2012-41호	애플 앱스토어 내 '뽕뽕마스터 Free'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12	2012-9234	제 2012-41호	구글 플레이 내 '바나나존'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13	2012-9235	제 2012-41호	구글 플레이 내 '술집정보[남수클럽]'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14	2012-9236	제 2012-41호	구글 플레이 내 '밤문화 성인 유희어플 야독 시즌2-비즈니스 접
애플리케이션	15	2012-9237	제 2012-41호	구글 플레이 내 '유토피아' 애플리케이션
애플리케이션	16	2012-9238	제 2012-41호	구글 플레이 내 '찌라시' 애플리케이션

[그림 5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목록표 (인터넷 부문 발췌)]

매체분	순서	일련번호	고시호수	정보위치	정보제공자
인터넷	67220	2018-8440	제 2018-45호	joara.com 내 '노블레스 - 성인' 메뉴	(주)조아라
인터넷	67221	2018-10256	제 2018-55호	vipalba.com	VIP알바
인터넷	67222	2018-10257	제 2018-55호	mavely.net	마블리
인터넷	67223	2018-10258	제 2018-55호	actonoon.co.kr	누나알바
인터넷	67224	2018-10259	제 2018-55호	art-korea.or.kr/checkAdult.php	빨리알바
인터넷	67225	2018-10260	제 2018-55호	badalba2.com	악녀알바
인터넷	67226	2018-10261	제 2018-55호	yeotopalba.com	알바이지
인터넷	67227	2018-10262	제 2018-55호	tenpro.whoalba.org/main.php	알바프로
인터넷	67228	2018-10263	제 2018-55호	nightlifealba.whoalba.org/main.php	알바프로
인터넷	67229	2018-10264	제 2018-55호	honaya.co.kr	호나야
인터넷	67230	2018-10265	제 2018-55호	soxak.com 내 19성인 메뉴	속삭닷컴
인터넷	67231	2019-1	제 2019-1호	ssalba.co.kr	호빠알바
인터넷	67232	2019-2	제 2019-1호	siljang01.cafe24.com/main	여자알바
인터넷	67233	2019-3	제 2019-1호	albabucks.co.kr	알바벅스
인터넷	67234	2019-4	제 2019-1호	albaline.co.kr	알바라인

만약 청구인 주장대로 청소년유해매체물 지정은 매우 많은 정보에 대해 기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결과 현존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데이터베이스는 불완전하여 합법적인 정보도 차단될 가능성이 높다면 차단 내용을 지정한 각 심의기관에 대해서 알권리 제한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히 차단 수단을 제공하도록 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알권리 제한과 무관하며, 나아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음란정보는 명백한 불법정보로서, 청소년 뿐 아니라 누구의 알권리의 대상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라. 부모의 교육권 제한 여부**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부모에게 차단앱 삭제 여부만을 고지할 뿐 차단앱 삭제 자체를 금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도 서비스 해지를 위한 안내가 제공되고 있음이 확인 가능합니다. 즉, 부모의 선택에 따라 차단앱을 얼마든지 삭제할 수 있으므로 부모의 교육권은 전혀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림 6 SKT T청소년안심서비스 해지안내]

**가입/해지 채널**

가입/해지 채널 및 상세경로 안내

유형	가입/해지 채널	상세경로
	T world	상품 > 부가서비스 > 생활정보 > 정보 > T청소년안심서비스
가입	고객센터	1566-0011 (SKT고객센터)
	지점/대리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후 가입
해지	지점/대리점	법정대리인 동의 확인 후 해지 가능 (대면 채널 한정)

나아가 부모에게 차단수단 삭제 여부를 고지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육권이 보장

5) 참고자료 7-1, 참고자료 7-2 차단앱 해지안내 페이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시행령 조항은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차단 삭제 방지의무를 부여한 것이 아니라 부모에게 차단앱 구동 여부를 알려주어 자녀를 교육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이동통신사업자는 부모에게 차단앱 구동 여부만을 알려줄 뿐이고 차단앱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므로, 예를 들어 차단 앱이 구동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를 받은 부모는 본인의 교육관에 따라 자녀 교육에 차단앱이 필요하다고 생각될 경우 차단앱을 재설치를 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재설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청구인은 2016년 12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제32조의7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법정대리인이 서면으로 차단수단을 이용하지 않겠다는 신청을 한 경우 차단수단을 제공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려 했으므로 이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스스로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가진 문제를 자인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개정안은 부모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것을 법 문언상 명확히 하고자 한 개정안일 뿐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이 부모의 선택권을 박탈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위 개정안과 무관하게 이미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부모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 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

##### 가. 청소년 보호에 대한 헌법적 요청

청소년기는 20대 이후의 사회생활을 대비하고 전 생애에 걸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습득하는 시기이고, 청소년은 미래에 국가발전을 위한 중요한 인적자원입니다. 한편,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하여 미숙한 존재이므로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하여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바, 헌법도 국가에 대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헌법 제34조 제4항).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접할 수 있는 청소년 유해매체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정신의 함양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즉,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온라인상의 음란물, 불법도박 등이 범람하여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가 쉽게 노출되는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음에도 가정 및 학교 등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이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어렵다는 인식 하에 도입된 조항으로, 국가의 청소년 보호의무의 일환으로 마련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사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청구인 역시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하에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침해하는 것인지 위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나. 수단의 적합성

청구인은 법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도 사후 삭제를 허용한다고 읽힐 수 없고 스



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스마트폰 사용시간 제한, 위치추적, 와이파이 차단, 카톡 차단 등의 원격 관리 기능을 포함한 다양한 추가적 기능을 제공하여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차단앱의 강제설치는 입법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단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등의 기능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강제하고 있는 차단기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위헌성 판단이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시중의 차단앱이 유해매체물 차단 외에 여러 가지 기능을 제공하는 이유는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부모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여 고객의 수요에 부응하고 교육권을 기술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으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이 사건 시행령 조항에 따라 이동통신사업자는 부모에게 차단앱 삭제 여부를 고지할 뿐 차단앱 재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통신서비스 이용이 불가하다는 등의 불이익을 가하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조항 어디에도 차단수단이 삭제될 경우 서비스의 정상적인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은 없으며, 법 문언을 어떻게 해석해도 사후 삭제가 금지된다고 읽힐 수 없습니다. 즉, 차단앱 설치가 무조건적으로 강제되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선택에 따라 사후적으로 삭제가 가능하며, 차단수단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홈페이지에도 서비스 해지를 위한 안내가 제공되고 있음이 확인됩니다<sup>6)</sup>.

6) 참고자료 7-1, 참고자료 7-2 차단앱 해지안내 페이지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심판청구서에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대해 차단앱의 삭제가 절대 불가한 것처럼 표현하면서 ‘마치 강제적 섀다운제처럼, 그보다 더 침해적으로 “청소년 보호라는 명분에 치우쳐” 국가가 청소년의 스마트폰 사용까지 챙기고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는 “전근대적이고 국가주의적일 뿐만 아니라 행정편의 주의적인 발생에 기대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그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는 주장이며 헌법재판소 결정의 소수의견을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태도인양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오히려 부당합니다.

더 나아가 청구인은 차단앱이 지나친 통제성으로 인해 오히려 부모와 자녀 간의 갈등 유발 가능성이 크며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을 중재하는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부모의 중재유형이 인터넷 이용이나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통제에 기반한 적극적인 개입이 게임이용시간이나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sup>7)</sup>. 또한 부모의 중재유형이 인터넷 중독을 예방하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분석한 <인터넷 중독에 대한 부모중재 효과 연구>에서는, 컴퓨터 잠금장치가 되어있거나 유해사이트 차단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기술적 중재나 인터넷 매체에 대한 평가 및 설명을 제공하는 적극적 중재가 인터넷 중독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sup>8)</sup>.

이와 같은 선행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차단앱과 같은 기술적 중재를 통한 통제가 스마트폰 이용을 중재하는데 효과가 없다는 것은 청구인의 지나친 비약에

7) 참고자료 8 임소혜·조연하, 부모와 또래집단의 게임이용중재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권 4호

8) 참고자료 9 이숙정·전소현, 인터넷중독에 대한 부모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해당합니다.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역시 스마트폰을 통한 유해매체 노출 여부에 대한 점검과 즉각적인 차단 방안이 마련될 필요 있음을 강조하면서 청소년 스마트폰에 차단앱 설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정책제언 하고 있습니다).

삭제, 공장초기화, 루팅, 우회 등으로 차단앱을 삭제하여 차단수단 자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 역시 차단수단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지, 운영상의 미비점을 이유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 다. 침해의 최소성

청구인은 ① 이미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네트워크 필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까지 하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에 해당하고, ② 차단수단을 강제하는 입법례는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으며, ③ 자율규제 모델과 같이 차단앱 의무설치보다 덜 침해적인 수단이 존재하므로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업자들이 불법정보에 대하여 네트워크 필터링을 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른 것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차단대상으로 심의의결한 것에 대해 이루어지는 반면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청소년보호법상

9) 참고자료 10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35면-238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것도 차단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네트워크 필터링 대상이 되는 불법정보보다 범위가 넓어 별도로 작동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은 인터넷 웹사이트 뿐만 아니라 애플리케이션도 지정된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사업자들이 기존에 행하고 있었던 웹사이트 네트워크 필터링보다 그 보호 범위가 넓습니다.

청구인은 청소년에게만 접근이 제한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과 성인에게도 접근이 제한되는 불법정보를 구별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하여서는 불법정보에 대한 차단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까지 하는 것은 중복적인 규제로 실효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2019. 6. 7.자 의견서 제15면, 제24면), 이는 주장 자체로 모순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함으로써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취지를 간과한 주장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 같은 차단수단 제공의무가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규제라고 주장하나 일본은 이미 2008년에 휴대폰 사업자에게 '유해사이트 필터링 서비스'를 18세 미만 청소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의무가입시키도록 결정한 바 있습니다<sup>10)</sup>. 청구인은 일본의 네트워크 필터링은 인터넷 사용 시에만 작동하는 것으로 다양한 추가 기능을 갖추고 있는 차단앱과는 매우 큰 차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법적인 의무로 삼고 있는 차단기능은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 차단에 한정되는 것이므로 일본의 사례와 유의미한 차

10) 참고자료 11 김연건 동경무역관, '日 휴대폰 콘텐츠계, 유해사이트 필터링 가입필수로 타격예상, KOTRA 해외 시장뉴스, 2008.2.18.자 기사



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전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규제라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또한 청구인은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에게 정보제공에 그치는 자율규제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하나, 자율규제모델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존재합니다. 일례로 게임산업법에는 청소년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게임의 이용방법 및 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이른바 '선택적 섯다운제'가 규정되어 있었는데, 강제적 섯다운제의 위헌여부와 관련된 결정에서는 '현재까지 청소년이나 부모의 선택적 섯다운제의 이용률은 매우 미미한 수준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 자체만으로는 과도한 인터넷게임 이용 및 중독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되기 어렵다. 그러므로 게임산업법상 '선택적 섯다운제'가 이 사건 금지조항과 동일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덜 제한적인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14. 4. 24. 2011헌마659 등).

본건 역시 자율규제모델로는 스마트폰상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을 통한 청소년 보호라는 입법목적은 달성하기에 역부족일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SNS, 랜덤채팅앱 등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온라인상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현황<sup>11)</sup>에 따르면 매년 그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 참고자료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2019 통신심의 의결현황

**<온라인 상 불법정보\*에 대한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시정요구	2014	2015	2016	2017**	2018
삭제	24,581	27,650	35,709	15,499	41,000
이용해지	10,031	9,821	8,422	2,617	9,041
접속차단	97,095	111,008	157,451	66,659	187,980
기타	11,77	272	209	97	225
합계	132,884	148,751	201,791	84,872	238,246

\* 도박, 성매매·음란정보, 불법 식·의약품, 권리침해 등

\*\* 2017년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3기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이후 4기 위원회 인선까지 약 7개월간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예외적으로 시정요구 건수가 전년도에 비해 줄어든 것임

특히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인터넷 환경의 발전과 스마트폰 이용률의 증가로 초등학생도 성인용 영상물과 간행물에 쉽게 저촉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고 있으며 2014년 이후 초등학생의 성인용 영상물 및 간행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sup>12)</sup>.

**<성인용 간행물 이용률: 2014-2018년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성별		학교급		
		남자	여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2014	-	-	-	2.6	21.9	32.5
2016	22.0	25.8	17.8	11.8 (5-6학년 9.3)	22.5	29.1
2018	23.3	25.9	20.5	13.2 (5-6학년 10.6)	25.0	29.8

청소년들이 인터넷 웹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해매체물을 손쉽게 접할

12) 참고자료 10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수 있고, 온라인상 불법정보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자율규제에만 맡겨둘 경우 청소년들이 불법유해정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습니다. 차단앱 등 차단수단의 사후적인 삭제가 자유롭기 때문에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유해차단앱의 설치율이 낮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sup>13)</sup>. 이러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오히려 차단앱의 설치율을 제고해야 될 방안을 찾아야 할 실정인바, 하물며 차단수단 설치를 자율에만 맡겨둘 경우 위와 같은 차단수단은 무용지물이 될 것임이 분명합니다.

**<사용하는 휴대폰/스마트폰의 청소년 유해사이트 차단 프로그램 설치 여부: 2013-2018년 비교>**

(단위: %)

구분	전체 설치율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설치됨	설치안됨	모르겠음	설치됨	설치안됨	모르겠음	설치됨	설치안됨	모르겠음
2013	13.4	14.2	41.9	43.9	13.4	55.2	31.4	12.6	63.6	23.8
2016	25.4	34.1	23.7	42.2	23.4	37.9	38.7	20.3	49.0	30.7
2018	25.1	37.6	24.3	38.2	23.3	39.5	37.2	16.7	50.8	32.5

한편,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경우 성인인증을 통해 접속을 제한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2013년에 분석한 3,628 건의 불법·유해정보 앱(다운로드 횟수가 50건 이상인 앱으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함) 중 많은 앱이 연령등급이 부여되지 않았거나(1,332건), 4세 이상 전체 이용 가능 등급(29건)으로 부여된 경우도 있었고, 연령등급 안내문이 부여되지 않은 경우(1,546건), 유해성 경고표시가 없는 경우(1,383건)가 많은 점에 비추어 볼 때<sup>14)</sup>, 연령등급도 제대로

13) 참고자료 10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14) 참고자료 3.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스마트폰 오픈마켓 불법·유해정보 현황 및 국내외 규제정책 비교 연구”.

부여되지 않은 수많은 앱에 성인인증 절차까지 제대로 구비되었는지 일일이 확인하는 것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합니다. 게다가 수십만 건에 달하는 앱 다운로드 건수에 비해 앱마켓 제재는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으로, 앱스토어에서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는 채팅앱의 경우 청소년 성매매의 온상이 되고 있으며<sup>15)</sup> 앱 상에서 성인인증을 요구하더라도 청소년 대상 성매매가 근절되지 않는 등 청소년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sup>16)</sup>. 성인 콘텐츠에 대한 과도한 추가 인증 절차가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해 결국 사업을 방해하게 되며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콘텐츠 산업을 죽이는 행위라는 반발이 가해졌던 과거의 사례를 참고해 보더라도, 성인인증절차 강화 역시 쉽게 도입할 수 있는 대안이 되기는 어렵습니다<sup>17)</sup>.

결국 불법·유해정보가 범람하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보호대상인 청소년에 한정하여 차단앱 설치를 하도록 하여 청소년이 불법유해정보에 최종 접촉하는 지점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덜 침해적인 수단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 라. 법익의 균형성

2019. 1. 1.부터 6. 30.까지만 하더라도 불법 도박으로 시정요구를 받은 건수는 23,720건, 성매매·음란사이트의 경우 25,180건에 달하는 등 정보통신망에서의 불법정보 유통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sup>18)</sup>. 스마트폰을 통해 불법촬영물<sup>19)</sup> 및 자

2013. 12., 68~73면

15) 참고자료 13 이현수 기자, “성매매 온상 된 ‘채팅앱’...성인인증 절차 없어 청소년도 악용”, 전자신문, 2019.05.22.자 기사

16) 참고자료 14 구무서 기자, “채팅 사라진 채팅앱...청소년 성매매만 남았다”, 뉴시스, 2019.05.08.자 기사

17) 참고자료 15 이재은 기자,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성인인증 정책 ‘물익’”, 조선비즈, 2014.08.21.자 기사



극적인 영상매체물이 범람하는 불법 음란 사이트, 사행성을 조장하는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sup>20)</sup>에 너무나도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하면,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청소년 유해매체물과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해야 할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을 이행하지 않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에게 가해지는 법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설치율이 높지 않은 것이 문제라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 8 불이행에 대한 전기통신사업자 처벌 조항 신설을 요청하는 대정부 제안을 하기도 하였습니다<sup>21)</sup>.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불법유해정보 등으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스마트폰 사용 실시간 모니터링, 사용시간 제한, 위치추적 등 추가적인 기능제공은 법적인 의무에서 제외하고, 차단수단의 작동 여부를 법정대리인에게 통지할 뿐 사후적인 삭제를 금지하지 않도록 하여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는 고전적인 통신수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복제성, 확장성, 신속성을 가지고 유통되기 때문에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불법정보에 대하여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은 무분별하게 청소년 유해매체물 등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청소년기의 문제적인 행동은 전 생애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게 될 위

18) 참고자료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2019 통신심의 의결현황

19)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영상물에 대한 피해는 날로 커져가는 가운데,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통한 음란물 유통에 대한 수사 등 실질적인 사법 구제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해당 사이트에 대한 접근 자체를 차단할 필요성은 더욱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참고자료 16 김승재 기자, "지우고 지워도 뜨는 몰카 영상... 좀비랑 싸우는 기분", 조선일보, 2018. 7. 12.].

20) 참고자료 17 고경호 기자, "청소년 도박 수단 '스마트폰'...유해 매체 차단 '허술'", 제주일보, 2019.5.26.자 기사

21) 참고자료 18 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제안, 2019.5.31.

협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청소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적 차원에서 청소년기 스마트폰 유해매체물 차단에 대한 조기개입의 필요성이 절실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유해매체물 차단수단 제공을 통한 건전한 통신윤리의 함양과 청소년 보호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것이어서 비록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해 일부 기본권 제한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의 올바른 정신적 성장을 고려하였을 때 법익의 균형성을 위반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5. 적법요건의 흠결

### 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

청구인은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의 입법목적이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및 음란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함이며, 실질적인 규율대상도 스마트폰에 차단수단이 설치됨으로 인해 콘텐츠 접근을 자유로이 할 수 없는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차단수단 제공의무 조항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차단수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92조 제1항은 위 조항 위반시 방송통신위원회가 시정명령을 가할 수 있



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조항의 의무부과대상은 청구인과 같은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자가 아니라 방송통신위원회의 명령을 받는 사업자, 즉 이동통신사업자임이 명백합니다.

또한 권리자의 허락없이 불법유통음원을 감상할 수 있도록 한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라는 방심위의 시정요구에 따라 정보통신사업자가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하였고 이에 대해 웹사이트의 이용자가 해당 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전기통신사업법은 이용자의 보호라는 일반적인 공익을 위한 조항만이 있고, 원고를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이용자에게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보아 취소소송에 대한 원고적격을 부정한바 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5. 4. 10 선고 2014누65693 판결). 이용자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상의 개별적, 직접적,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없다고 본 위 법원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 역시 위 조항의 직접적인 수범자인 이동통신사업자가 아닌 청소년 및 법정대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하며,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의 의무부과 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 불과한 청구

인은 위 조항에 대하여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에 해당하고 직접적,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는바, 본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나. 현재성

청구인은 우리나라 10대의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일반 이동전화, 스마트폰, 스마트패드 등을 통해 무선인터넷을 이용한 사람)는 98.7%에 달하므로 이러한 통계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 2와 청구인3의 스마트폰 계약 체결은 단순히 잠재적인 것이 아니라 그 침해가 분명하게 예측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청구인이 근거로 든 통계는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로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아도 와이파이 등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스마트패드 등이 포함된 통계이고, 10대가 자신의 스마트폰이 아닌 부모님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래 스마트폰 이용계약을 체결할 것이 분명히 예측되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비록 모바일 인터넷 이용자 비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이상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현재 청구인2와 청구인3이 스마트폰 구입을 하지 않은 이상 기본권 침해의 현재성이 구비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 6. 결론

이상과 같은 사정을 모두 고려하시어, 청구인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2019. 10. 4.

### 참 고 자 료

1. 참고자료 6-1 여성가족부 고시 제2019-23호
1. 참고자료 6-2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인터넷 부문 발췌 (2018-2019)
1. 참고자료 6-3 청소년유해매체물(전기통신정보) 고시 애플리케이션 부문
1. 참고자료 7-1 SKT T청소년안심서비스 해지 안내 페이지
1. 참고자료 7-2 LGU+ 자녀폰지킴이 해지 안내 페이지
1. 참고자료 8 임소혜·조연하, 부모와 또래집단의 게임이용중재가 청소년의 게임이용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8권 4호
1. 참고자료 9 이숙정·전소현, 인터넷중독에 대한 부모중재 효과 연구, 한국방송학보, 24권 6호
1. 참고자료 10 여성가족부, 2018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분석보고서, 235면-238면
1. 참고자료 11 김연건 동경무역관, '日 휴대폰 콘텐츠계, 유해사이트 필터

링 가입필수로 타격예상, KOTRA 해외시장뉴스, 2008.2.18.

자 기사

1. 참고자료 1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2019 통신심의 의결현황
1. 참고자료 13 이현수 기자, "성매매 온상 된 '채팅앱'...성인인증 절차 없  
어 청소년도 악용", 전자신문, 2019.05.22.자 기사
1. 참고자료 14 구무서 기자, "채팅 사라진 채팅앱...청소년 성매매만 남았  
다", 뉴시스, 2019.05.08.자 기사
1. 참고자료 15 이재은 기자, "여성가족부의 과도한 성인인증 정책 '물의를',  
조선비즈, 2014.08.21.자 기사
1. 참고자료 16 김승재 기자, "지우고 지워도 뜨는 몰카 영상... 좀비랑 싸  
우는 기분", 조선일보, 2018. 7. 12.자 기사
1. 참고자료 17 고경호 기자, "청소년 도박 수단 '스마트폰'...유해 매체 차  
단 '허술'", 제주일보, 2019.5.26.자 기사
1. 참고자료 18 제67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대정부제안, 2019.5.31.

### 첨 부 서 류

1. 위 참고자료

각 1부



이해관계인 대리인

범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강 신 욱



담당변호사 장 준 영



담당변호사 강 현 정



담당변호사 이 민 영



담당변호사 강 지 현

